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87
----------	-------

발의연월일 : 2026. 10. 14.

발 의 자 : 양부남 · 윤준병 · 정준호
김한규 · 김남희 · 박은정
민병덕 · 박선원 · 조계원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수사 종료 후 기관장·주무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

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으로,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를 “사건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가지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등의 인사상 조치를 위하여 해당 조사나 수사

를 한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조사 또는 수사의 개시·종료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또는 수사에 따른 사실과 결과를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u>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u>감사원</u> 2. <u>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u> 3.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① <u>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u>에 대하여 다음----- ----- <u>사건</u>에----- ----- ----- -----. 1. <u>직무와 관련된 사건</u>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u> 가. 「<u>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u>

<신 설>

<신 설>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
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
의2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사
건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스톱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출자·출연 기
관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권
한을 가지는 주무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
항에 따른 사실과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은 제1항

<신 설>

및 제2항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상 조치를 위하여 해당 조사나 수사를 한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